

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공무원(행정6급)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6-72호, 제2026-80호 관련,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공무원
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5일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 최종합격자

채용분야	응시번호(성명)
법무행정	심사11(김○○)
민원조사	합격자 없음

※ 최종합격자에게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별도 안내할 예정

2 최종합격자 등록 안내

- ☐ 등록 기간 : 2026. 8. 25.(화) ~ 2026. 9. 1.(화)
- ☐ 등록 방법 : 최종합격자 서류 우편 제출
 - (우편번호 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-2동
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공무원채용담당)
 - ※ 등록기간 마감일 18:00까지 등기우편(원본)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① 기본증명서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) 1부

※ 종류 : "상세"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표시되도록 발급

②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) 1부

※ 종류 : "상세"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표시되도록 발급

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<서식 참고>

④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<서식 참고>

-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·병원·종합병원)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함
-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개정('26.6.16.)으로 마약류 6종 검사가 포함되어 검진 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지 사전 확인 후 방문 필요

※ 인화 현상된 사진파일 1장 필요(검사서 양식은 병·의원마다 다를 수 있음)

⑤ 증명사진 1매 (여권사진 규격)

※ 사진 파일도 담당자 [메일\(nikee1011@korea.kr\)](mailto:nikee1011@korea.kr)로 별도 제출

□ 유의사항

-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조치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국민 권익위원회의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.
-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, 채용부적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**문의처** :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☎ 044-200-7180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민권익위원회, 경찰청(소속기관 포함)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등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
1	결격사유 유무조회
2	범죄경력 유무조회
3	병적조회
4	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☒ 주민등록 ☐ 여권 ☐ 외국인등록 ☐ 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.5cm × 4.5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허리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) 우: ()
종 양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골격계 질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 부 X선 검 사	
기 타			

마약류 검사

필로폰		대마		케타민		엑스터시		코카인		아편	
-----	--	----	--	-----	--	------	--	-----	--	----	--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	[]합 격	합격 사유	
합격 여부	[]판 정 보 류	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(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결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판정보류"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임신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 - 다.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"양성" 또는 "음성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(예시: "만성골수성백혈병"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
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4. 검사 내용 중 "마약류 검사" 항목만 제외하거나,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5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